

『구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유관기관간 협의 승인된 「구미시 통합방위 예규」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협의회 심의사항에 지역예비군의 육성·운영 및 지원대책 신설 (안 제2조제8호)
-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작전지원, 예비군지원, 총무 및 민방위 지원에 관한 임무를 구체적으로 제시(안 제4조제3항)
- 통합방위예규가 전·평시 통합방위작전의 근간이 되도록 조례반영 (안 제4조의 2 신설)

4. 참고사항

-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제3항, 제17조제3항
- 대통령 훈령 제28호 「통합방위지침」
- 「향토예비군설치법」 제14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3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실효성 있는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을지훈련, 화랑연습 등 각종 훈련시 민관군경 통합방위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미비한 내용을 보완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 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협의회 심의사항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향토예비군 육성·지원대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
- “지역군부대 작전참모”를 “지역군부대 작전과장”으로 “동원장교”를 “동원과장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 간사임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
- 지역내 테러, 침투, 국지도발,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사항 발생시 구미시 통합방위예규 적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통합방위법에 의거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통합방위태세의 상호협조와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